

11. 건축사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 (안)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제2000-53호 2000. 2. 21

1. 건축사법시행령중개정령(안)

개 정 이 유

건축사 자격시험을 설계과목위주로 변경하고 건축사위원회를 건축사 제도개선을 위한 심의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건축사심의위원회로 개편함으로써 건축사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, 건축사 행정처분에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축사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주 요 골 자

- 가. 건축사면허제도를 폐지하여 건축사자격제도를 일원화함으로써 자격→면허→등록으로 운영되던 건축사제도를 자격→신고로 단순화
- 나. 건축사가 성명, 근무처 등을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상변동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이를 폐지함.
- 다. 건축사자격시험이던 건축법규과목을 건축사 예비시험에서 치르게 하고, 건축사자격시험에는 실기평가인 배치계획과목을 추가함.
- 라. 건축사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위주의 기능을 하는 건축사위원회를 건축사자격제도 운영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심의기능으로 전환하며 명칭도 건축사심의위원회로 변경

- 마. 건축사의 건축허가신청후 7일 이내 건축사협회에 설계도서신고의무폐지에 따른 설계도서 신고절차 규정 삭제
- 바.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신고제로 전환하고, 5년마다 사무소등록을 갱신토록 하던 것을 폐지해 등록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
- 사. 건축사행정처분의 기준등을 건설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하여 법률적 효력을 강화하고, 행정처분기준을 구체화하여 행정처분의 명료성을 확보
- 아. 건축사협회의 복수화 허용에 따라 건축사보신고 및 건축사시험관리 업무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.

2. 건축사법시행령규칙중개정령(안)

개 정 이 유

건축사자격증등의 재교부시 시·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며 건설업자소속 건축사는 자가업무용 건축물에 한해 건축설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건축사행정처분규정을 대통령령에서 정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등 건축사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주 요 골 자

- 가. 건축사보의 신고시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신원확인이 가능하게 함.
- 나. 건축사자격증 등의 재발급이 시·도지사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던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민원처리

기간의 단축

- 다. 건축사면허제를 자격제로 변경하고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신고제로 전환하여 절차를 간소화
- 라. 건설업자 소속 건축사에게 당해 건설업자(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의 계열회사 포함)의 자가 업무용 건축물(사옥)에 한해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함.
- 마. 건축사행정처분규정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서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행정처분결과를 각 시·도지사와 건축사협회에 통보하던 것을 건축사협회에만 통보하도록 하여 절차 간소화
- 바. 건축사무소개설자의 건축설계도면 비치·보관의무를 폐지하고 행정청에서 보관하도록 함.

주택회보